

강원관광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심사규정

(제정 2010. 3 . 1.)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 교직원인사규정 제7조에 의하여 강원관광대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 장 신규임용

제 2 조 (심사대상) ① 신규임용심사는 본교에 신규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 3 조 (지원자격) 교원의 신규임용 지원자격은 [별표 1] 의 전문대학 교원자격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로 연구실적이 200%이상인 자로 하되,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이 탁월하거나 실험실습 능력이 출중한 자를 신규 임용할 수 있다.

제 4 조 (채용방법)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·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,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.

③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1. 기초심사 :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
2. 전공심사 :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 능력 등의 심사
3. 면접심사 :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

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분야와 관련이 있는 대학소속의 교원(내부위원)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

위촉한다.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이 당해 대학 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.

⑤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분야·채용인원·지원자격·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·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⑥ 총장은 지원자가 10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⑦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.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신규임용자의 심사자료) 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원서
2. 학·석·박사과정별 학력 및 성적증명서
3. 재직 및 경력증명서
4. 석·박사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(최근 4년 이내 발표)
5. 기타 자료

제 6 조 (구비서류) 교원의 신규 임용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력서 1부.
2. 인사기록카드 1부.
3.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1부
4. 연구실적물 200%
5. 주민등록등본 1부.
6. 병역증명서(또는 주민등록초본) 1부.
7. 가족관계증명서 1부.
8. 경력증명서(재직기관별) 각1부.
9. 채용신체검사서 1부.
10. 신원조회 결과 1부.
11.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제 7 조 (신규 임용심사절차)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절차는 [별표 2] 와 같다.

②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원조사 및 학력·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. 부득이한 경우 임용 후 신원조사 및 학력·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나, 결격사유나 허위 경력

이 발생시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.

제 2 장 기초 및 전공(연구실적) 심사

제 8 조 (기초 및 전공(연구실적)심사 위원회 임명) ① 기초 및 연구실적심사 위원회의 심사 위원은 학과(장)가 추천하는 내부위원(전공교원) 2명과 총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, 총 3명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전공(학과)교원 수의 부족 또는 전공(공개발표) 심사위원회와의 중복 등으로 인해 전공(학과) 추천의 심사위원이 2명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전공 교원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기초 및 전공(연구실적) 심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외부위원은 응모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 또는 전문가를 위촉한다.

⑤ 임명(위촉)된 기초 및 연구실적심사위원은 대외적으로 공표를 금지한다.

제 9 조 (기초 및 전공(연구실적)심사 방법) ① 기초 및 전공(연구실적) 심사는 [별표 5] 서식에 의하여 각 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한다.

② 해당 전공(학과)에서는 전공의 일치성 및 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“교원충원요구서”에 세부전공 및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교학처에 사전 제출하며, 평가시 이를 적용한다.

③ 기초 및 전공(연구실적)심사 70점을 총평정점으로 하여, 기초심사 30점과 전공(연구실적)심사 40점으로 평가기준은 [별표 3] 서식에 의하여 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한다.

④ 국외 석사학위 취득 시 학문논문이 아닌 시험(성적)으로 통과하여 취득한 자는 학위기 상의 전공영역 또는 성적증명서 상의 전공분야 및 이수교과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.

⑤ 기초심사 평가기준 중 전공적격 여부를 “부”로 평가한 경우에는 전공(연구실적물 평가) 심사를 할 수 없다.

제 10조 (연구실적물 평가기준) ① 신규임용 대상자는 석·박사학위 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물이 200%이상 있어야하며, 연구실적물의범위, 연구실적물의인정,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각각 교직원인사규정 제11조, 12조, 13조 ④항을 따르도록 한다.

② 연구실적물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평가한다.

단, 학위논문은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며, 지원 서류제출 시 출판(간)된 실적물만 인정한다.

제 11조 (공개발표대상자 선발) 기초 및 전공(연구실적)심사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 점수를 교학처에서 합산한 후 고득점자(평균) 순에 따라 모집인원의 6배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받아 공개발표 심사 대상자로 선발한다.

제 3 장 전공(공개발표) 심사

제 12 조(전공(공개발표)심사 위원의 임명) ① 전공(공개발표)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학과(장)가 추천하는 내부위원(전공교원) 2명과 총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, 총 3명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전공(학과)교원 수의 부족 또는 기초 및 전공(연구실적) 심사위원회와의 중복 등으로 인해 전공(학과) 추천의 심사위원이 2명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전공 교원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전공(공개발표) 심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외부위원은 응모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 또는 전문가를 위촉한다.

⑤ 임명(위촉)된 전공(공개발표) 심사위원은 대외적으로 공표를 금지한다.

제 13 조(전공(공개발표)심사 방법) ① 전공(공개발표) 심사는 [별표 6] 서식에 의하여 각 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한다.

② 공개발표 주제는 최종학위 논문 또는 지원자 지정 대표연구실적물에서 지원자가 택일하여 발표하며, 이에 따른 세부 진행계획은 해당 학과에서 수립하여 교학처에 사전 제출한다. 다만, 실기지도가 필요한 초빙분야의 공개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실기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.

③ 전공(공개발표)심사는 70점을 총평정점으로하여 전공심사 30점, 공개발표 40점으로 한다.

④ 공개발표 평가 시 학과의 교원과 해당 전공 학생대표는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관을 허용한다.

제 14 조 (전공(공개발표) 심사 진행 및 절차) ① 교원초빙 일정에 따라 정해진 공개발표 심사 기간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한다.

② 분배된 심사자료는 위원장이 관리하고 심사 자료는 일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심사 종료 후 관련 자료 일체를 교학처로 반납한다.

③ 완료된 심사평가표는 서명 날인 후 개별적으로 봉인하여 심사 당일 교학처에 제출한다.

제 15 조 (면접심사대상자 선발) ① 기초 및 전공(연구실적)심사와 전공(공개발표)심사 결과에 대해 심사위원회별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적용한다.

② 제1항의 평균점수, 기초 및 전공(연구실적)심사위원회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 점수와 전공심사위원회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 점수를 교학처에서 합산 후 고득점자(평균) 순에 따라 모집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받아 면접심사대상자로 선발한다.

제 4 장 면접심사

제 16 조 (면접심사 위원의 임명)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, 교학처장과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제 17 조 (면접심사 방법) 면접심사는 [별표 7] 서식에 의하여 각 심사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다.

제 18 조 (면접심사의 진행 및 절차) ① 면접심사위원회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 점수를 교학처에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. 다만, 면접대상별로 합산점수가 전원이 낮게 평가(평균 70점 이하) 되었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장은 후보자를 선발하지 못한 사유서(위원종합의견)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서류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면접심사 시 모든 진행 및 관리는 위원장이 주관한다.

③ 분배된 자료는 위원장이 관리하고 심사 자료는 일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심사 종료 후 관련 자료 및 심사평가표는 교학처에 제출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교수 및 조교의 자격 기준

(단위 : 년)

연구교육 경력연수 직 명	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
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
교수	4	6	10	5	8	13
부교수	3	4	7	4	6	10
조교수	2	2	4	3	4	7
전임강사	2	1	3	2	3	5
조교	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					

비고 :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.

[별표 2]

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

순번	절차	추진내용	담당부서	비고
1	충원계획	대학 장단기 발전 계획에 의거한 교직원 확보 계획과 학과의 요구(교원충원요구서)에 따라 충원 계획을 수립한다.	교학처	
2	충원결정	충원인원 계획을 결정한다.	총장 이사장	
3	채용공고	신문,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채용공고를 통하여 지원자를 확보한다.(지원자가 10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)	교학처 학 과	
4	지원자격 심사	초빙공고시 제시한 지원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[별표 3]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원자격 심사표를 작성한다.	학 과	
5	지원자격자 선발	지원자격 요건이 충족된 지원자를 선정, 발표하고 제출서류를 접수한다.	교학처	
6	심사위원회 구성	기초·연구실적 심사위원 및 전공(공개발표) 심사 위원회의 심사 위원은 학과(장)가 추천하는 내부위원(전공교원) 2명과 총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, 총 3명으로 구성	교학처	
7	기초전공 (연구실적) 심사	기초 및 연구실적심사위원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 개인별 [별표 5] 의 기초·전공(연구실적) 심사표를 작성한다. 모집인원의 6배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받아 공개발표 심사 대상으로 선발	기초 및 연구실적심사 위원	
8	전공(공개발표) 심사	전공(공개발표) 심사위원은 개인별 [별표 6] 의 전공(공개발표)심사표를 작성한다.	전공(공개발표) 심사위원	
9	면접대상자 통보	기초전공(연구실적) 심사결과와 전공(공개발표)심사결과를 합산 후 고득점자(평균) 순에 따라 모집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받아 면접심사대상자로 선발	교학처	
10	면접심사 위원회 구성 및 심사	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, 교학처장과 본대학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	교학처/면접 심사위원회	
11	교원인사위 원회 개최	면접심사 및 평가를 종합 [별표 4] 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	교원인사위 원회 교학처	
12	신원조회	제청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	교학처	
13	임용제청	학교법인에 신규 임용을 모집인원의 2~3배수 범위 내에서 제청한다.	총장	
14	법인이사회 및 임면보고	법인이사회 및 임면보고(계약서작성)	법인	

[별표 4]

전임교원 신규임용 종합 평가표

		세부항목	배점	평가점수	비고	
① 기초 전공 (연구 실적 심사 (70))	기초 심사 (모집분야 전공 영역의 일치여부)	전공적격여부	-			
		학부 전공	4			
		대학원성적	4			
		학위전공 일치 (학사20%, 석사30%, 박사50%)	10			
		교육 및 연구경력 (현장실무경력 포함) 전공일치 (관련분야근무)	12			
	전공 심사 (연구실적물 평가)	전체 연구실적물 (최근 4년간 연구실적량)	15			
		산학협력 및 수상실적 (단체수상은 50%적용)	5			
		대표연구실적 (학문적우수성)	최종 학위 논문	10		
			지원자지정대표연구실적물	10		
		② 전공 (공개 발표) 심사 (70)	전공 심사 (연구실적물 평가)	교육 및 연구경력 (현장실무경력 포함) 전공일치 (관련분야근무)	10	
대표연구실적 (학문적우수성)	최종 학위 논문			10		
	지원자지정대표연구실적물			10		
공개발표 평가요소	1) 내용의 전문성(실기지도 능력 및 방법)		8			
	2) 내용의 전달력(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)		8			
	3) 학습자의 참여(흥미) 유발정도		8			
	4) 학습자료의 적절성(강의 및 실기지도 준비(계획))		8			
	5) 질의에 대한 응답의 적절성		8			
평균(①+②/2)			140(70)			
③ 면접평가 (30%)	교육자로서의 사명감		15			
	전문대학에 적합한 교직원	15				
	발전기여도 및 가능성	15				
	학과발전을 위한 구상	15				
	본교에 대한 인식도 (발전방향에 대한 소견)	10				
	학생지도 능력 및 임할 자세	10				
	언어구사력	10				
	인성 및 품성	10				
소계			100(30)			

[별표 5]

전임교원 신규임용 기초·전공(연구실적) 심사표

지원학과		지원분야		성명	
기초 심사 (모집 분야 전공 영역 의 일치 여부)	평가항목	배점	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내용		평가점수
	전공적격여부	-	- 지원자가 전공이 초빙분야와의 적격여부를 가·부로 평가		가·부
	학부전공	4	$\frac{\text{전학년 평점평균}}{\text{최대평점}} \times 4$		
	대학원성적	4	$\frac{\text{전학년 평점평균}}{\text{최대평점}} \times 4$ ※ 석·박사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에는 석·박사과정성적은 합산하여 1/2로 산정한다		
	학위전공 일치 (학사20%, 석사30%, 박사50%)	10	- 학위증명서 및 논문을 확인하여 전공명을 기재 - 유사 전공은 학위별 적용비율을 반영하여 평가 ▷ 학사전공 : _____ ▷ 석사전공 : _____ ▷ 박사전공 : _____		
	교육 및 연구경력 (현장실무경력 포함) 전공일치 (관련분야근무)	12	- 초빙 학과(전공)의 “교원충원요구서”에 기재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우선 평가 - 지원서 경력 중 가장 유리한 1개 경력을 기준으로 인정하여 평가 - 근무기관, 근무년수, 전공일치 등을 감안하여 평가 ▷ 경력인정기관 _____		
전공 심사 (연구 실적 물 평가)	전 체 연구실적물 (최근 4년간 연구실적량)	15	국외학회논문집게재논문 1.5점 국내학회논문집게재논문 1점 교직원인사규정 제 11조에 의한 연구실적물 1점(단, 예능계열 전시, 입상작은 건당 0.5점) 국제학술대회논문 0.5점 국내학술대회논문 및 연구개발보고서 0.25점 ※ 연구실적의 인정 환산율은 교직원인사규정 제 13조 ④에 의해 산정		
	산학협력 및 수상실적	5	최근 3년간 산학연 위탁·공동연구과제 및 연구비 수혜 실적 ▷ _____ 수상실적 : 특허 : 0.5점/건,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수상 0.5점/건, 기타 사내 수상 0.25점/건 단, 단체 수상인 경우 50% 산정 ▷ _____		
	대표연구실적 (학문 적우수 성)	10	▷ 제목 : _____ _____		
	최종 학위 논문 지원자 지정대 표연구 실적물	10	▷ 제목 : _____ ▷ 발행기관 : _____ ▷ 출판일 : _____		
계	70				

년 월 일

심사위원 : 소속

성명

(인)

[별표 6]

전임교원 신규임용 전공(공개발표) 심사표

지원학과		지원분야		성명	
------	--	------	--	----	--

▶ 전공심사 평가요소

전공 심사 (연구 실적 물 평가)	평가항목	배점	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내용	평가점수
		교육 및 연구경력 (현장실무경력 포함) 전공일치 (관련분야근무)	10	- 초빙 학과(전공)의 “교원충원요구서”에 기재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우선 평가 - 지원서 경력 중 가장 유리한 1개 경력을 기준으로 인정하여 평가 - 근무기관, 근무년수, 전공일치 등을 감안하여 평가 ▷ 경력인정기관 _____
대표연구실적 (학문 적우수성)		10	▷ 제목 : _____	
최종 학위 논문		10	▷ 제목 : _____ ▷ 발행기관 : _____ ▷ 출판일 : _____	
계		30		

▶ 공개발표 평가요소

이론 및 실기분야	평가(40점)				점수
	A	B	C	D	
1) 내용의 전문성(실기지도 능력 및 방법)	8	6	4	2	
2) 내용의 전달력(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)	8	6	4	2	
3) 학습자의 참여(흥미) 유발정도	8	6	4	2	
4) 학습자료의 적절성(강의 및 실기지도 준비(계획))	8	6	4	2	
5) 질의에 대한 응답의 적절성	8	6	4	2	
계					
※ 평가의견이 D로 평가된 항목은 반드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
년 월 일

심사위원 : 소속

성명

(인)

【별표 7】

전임교원 면접평가표

지원학과		지원분야		성명		
항 목	배점	평정				비고
		A	B	C	계	
교육자로서의 사명감	15	15	12	10		평정은 A,B,C 3단계로 평정 한다.
전문대학에 적합한 교직원	15	15	12	10		
발전기여도 및 가능성	15	15	12	10		
학과발전을 위한 구상	15	15	12	10		
본교에 대한 인식도 (발전방향에 대한 소견)	10	10	7	5		
학생지도 능력 및 임할 자세	10	10	7	5		
언어구사력	10	10	7	5		
인성 및 품성	10	10	7	5		
계 (30%반영)	100					

년 월 일

심사위원 : 소속

성명

(인)